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757-7979**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상남도 진주시 1년이상 거주자 (2025.09.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상남도 진주시 1년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견본주택 오픈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9.18.(금)**	2026.09.18.(금)	2026.09.28.(월)	2026.09.29.(화)	2026.09.30.(수)	2026.10.08.(목)	2026.10.09.(금) ~ 2026.10.16.(금)	2026.10.19.(월) ~ 2026.10.21.(수)

1 공통 유의사항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는 대표문의(☎055-757-7979)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가 많아 상담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의 경우 상담자께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해당 사항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 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레이크써밋웰가.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 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u>최초 청약접수일 전일</u>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u>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u>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

- 「주택법」제6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공급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및「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제한 및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18.(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진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5.09.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9.28.(월)	2026.09.29.(화)	2026.09.30.(수)	2026.10.08.(목)	2026.10.09.(금) ~ 10.16.(금)	2026.10.19.(월) ~ 10.21.(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견본주택 (10:00 ~ 16:00)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092-1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진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액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부담하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APT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씩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해당없음**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 41412호 (2026.9.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24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6~27층 6개동 총 690세대
[특별공급 346세대(기관추천 60세대, 다자녀가구 69세대, 신혼부부 93세대, 노부모부양 20세대, 생애최초 42세대, 신생아 6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민영 주택	2026000446	01	078.8382	78	78.8382	22.4263	101.2645	66.5523	167.8168	44.7508	130	13	13	20	4	9	13	72	58	6
		02	084.9115A	84A	84.9115	26.2820	111.1935	71.6793	182.8728	48.1982	203	20	20	31	6	14	21	112	91	9
		03	084.9519B	84B	84.9519	28.1816	113.1335	71.7133	184.8468	48.2211	277	27	28	42	8	19	28	152	125	12
		04	119.6206	119	119.6206	25.6762	145.2968	100.9795	246.2763	67.8999	76	0	8	0	2	0	0	10	66	4
		05	182.9263	182PH	182.9263	53.7274	236.6537	154.4197	391.0734	103.8341	4	0	0	0	0	0	0	0	4	0
합 계											690	60	69	93	20	42	62	346	344	31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금액이 없음)
- 119타입 전용면적 산정 시 내부 PD면적 중심선기준으로 제외하여 전용면적에 벽체면적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산정방식변경에 따른 조정시 민원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78.8382	084.9115A	084.9519B	119.6206	182.9263
약식표기	78	84A	84B	119	182PH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분 (약식표기)			78	84A	84B	119	182PH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4	7	8	-	-	19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2	-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2	-	-	4
	장애인	경상남도	4	7	9	-	-	20
		울산광역시	1	1	2	-	-	4
		부산광역시	1	1	1	-	-	3
	중소기업 근로자		1	2	3	-	-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	20	28	8	-	69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31	42	-	-	9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6	8	2	-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9	14	19	-	-	42
신생아 특별공급			13	21	28	-	-	62
합계			72	112	152	10	0	346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세대, VAT)

약식표기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기간
								계약 시	계약 후 30일이내	2027.04.22.	2027.09.22.	2028.02.23.	2028.07.21.	2028.12.22.	2029.05.22.	
78	101동 4,5호 105동 4,5호	1층	4	140,191,350	319,808,650	-	460,000,000	10,000,000	3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2~4층	12	143,238,980	326,761,020	-	470,000,000	10,000,000	3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5~9층	20	145,677,090	332,322,910	-	478,000,000	10,000,000	3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143,400,000
		10~14층	20	147,200,910	335,799,090	-	483,000,000	10,000,000	3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44,900,000
		15~19층	20	148,724,730	339,275,270	-	488,000,000	10,000,000	3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46,400,000
		20~24층	6	150,248,550	342,751,450	-	493,000,000	10,000,000	3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47,900,000
	103동 1,2호	1층	1	141,715,170	323,284,830	-	465,000,000	10,000,000	3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139,500,000
		2~4층	5	144,762,800	330,237,200	-	475,000,000	10,000,000	3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42,500,000
		5~9층	10	147,200,910	335,799,090	-	483,000,000	10,000,000	3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44,900,000
		10~14층	10	148,724,730	339,275,270	-	488,000,000	10,000,000	3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46,400,000
		15~19층	10	150,248,550	342,751,450	-	493,000,000	10,000,000	3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47,900,000
		20~24층	10	151,772,370	346,227,630	-	498,000,000	10,000,000	3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49,400,000
		25층 이상	2	153,296,190	349,703,810	-	503,000,000	10,000,000	4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50,900,000
84A	101동 1호 102동 1호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1층	1	154,515,250	352,484,750	-	507,000,000	10,000,000	4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52,100,000
		2~4층	11	157,562,880	359,437,120	-	517,000,000	10,000,000	4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5~9층	25	160,000,990	364,999,010	-	525,000,000	10,000,000	4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57,500,000
		10~14층	25	161,524,810	368,475,190	-	530,000,000	10,000,000	4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59,000,000
		15~19층	25	163,048,630	371,951,370	-	535,000,000	10,000,000	4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60,500,000
		20~24층	22	164,572,450	375,427,550	-	540,000,000	10,000,000	4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62,000,000
		25층 이상	8	166,096,270	378,903,730	-	545,000,000	10,000,000	4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102동 4,5호 103동 5,6호	1층	4	156,343,830	356,656,170	-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2~4층	12	159,391,470	363,608,530	-	523,000,000	10,000,000	4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56,900,000
		5~9층	20	161,829,580	369,170,420	-	531,000,000	10,000,000	4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59,300,000
		10~14층	20	163,353,400	372,646,600	-	536,000,000	10,000,000	4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15~19층	14	164,877,210	376,122,790	-	541,000,000	10,000,000	4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20~24층	10	166,401,030	379,598,970	-	546,000,000	10,000,000	4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25층 이상	6	169,448,670	386,551,330	-	556,000,000	10,000,000	4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66,800,000
84B	101동 2,3호 104동 2,3호 105동 2,3호	1층	3	152,686,660	348,313,340	-	501,000,000	10,000,000	4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50,300,000
		2~4층	15	155,734,300	355,265,700	-	511,000,000	10,000,000	4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53,300,000
		5~9층	30	158,172,410	360,827,590	-	519,000,000	10,000,000	4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55,700,000
		10~14층	30	159,696,230	364,303,770	-	524,000,000	10,000,000	4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57,200,000
		15~19층	28	161,220,050	367,779,950	-	529,000,000	10,000,000	4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20~24층	14	162,743,870	371,256,130	-	534,000,000	10,000,000	4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25층 이상	3	164,267,690	374,732,310	-	539,000,000	10,000,000	4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102동 2,3호 103동 3,4호 106동 2,3호	1층	5	155,429,540	354,570,460	-	510,000,000	10,000,000	4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53,000,000
		2~4층	17	158,477,170	361,522,830	-	520,000,000	10,000,000	4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56,000,000
		5~9층	30	160,915,280	367,084,720	-	528,000,000	10,000,000	4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10~14층	30	162,439,100	370,560,900	-	533,000,000	10,000,000	4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59,900,000
		15~19층	30	163,962,920	374,037,080	-	538,000,000	10,000,000	4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20~24층	30	165,486,740	377,513,260	-	543,000,000	10,000,000	4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62,900,000
		25층 이상	12	168,534,380	384,465,620	-	553,000,000	10,000,000	4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65,900,000
119	104동 4,5호 106동 4,5호	1층	2	188,353,830	429,678,340	42,967,830	661,000,000	10,000,000	5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198,300,000
		2~4층	10	192,343,170	438,778,940	43,877,890	675,000,000	10,000,000	5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202,500,000
		5~9층	20	196,047,560	447,229,490	44,722,950	688,000,000	10,000,000	5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206,400,000
		10~14층	20	199,466,990	455,030,010	45,503,000	700,000,000	10,000,000	6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210,000,000
		15~19층	16	202,886,420	462,830,530	46,283,050	712,000,000	10,000,000	6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213,600,000
		20~23층	8	205,735,950	469,330,950	46,933,100	722,000,000	10,000,000	6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216,600,000
182PH	101동 2호 105동 2호	최상층	2	370,438,700	845,055,730	84,505,570	1,300,000,000	10,000,000	12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390,000,000
	102동 2호 106동 2호	최상층	2	397,509,220	906,809,800	90,680,980	1,395,000,000	10,000,000	129,500,000	139,500,000	139,500,000	139,500,000	139,500,000	139,500,000	139,500,000	418,500,000

▣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 개정 「주택법」 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대금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대금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금의 10%(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잔금대출은 정부의 금융규제 또는,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대출조건에 따른 적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잔금대출 신청 전 반드시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1~6회차 60%), 잔금(3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상기 내용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수분양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비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단위세대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및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판명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td></tr>
</table>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경남서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남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9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 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② 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 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 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able></td></tr>
</table>

당첨자 선정방법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 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9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 수 → ⑤ 추첨 ■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 순위

당첨자	

선정방법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유의사항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 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④ 미성년 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 미성년 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9.1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td></tr>
<tr><td colspan="2"><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td><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0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 rowspan="9">①
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
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9">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 colspan="6">※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able>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유의사항</td><td>■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td></tr>
</table>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42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본 아파트는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단독세대'는 청약이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 ① 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td></tr>
<tr><td>유의사항</td><td>■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able>
<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r><td>2026.09.18.</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
</table></td></tr>
</table>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가구원수 산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2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 ① 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td></tr>
<tr><td>유의사항</td><td>■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able>
<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r><td>2026.09.18.</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
</table>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table>
<tr><th rowspan="2">소득구분</th><th rowspan="2">비율</th><th colspan="6">소득금액</th></tr>
<tr><th>3인 이하</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
<tr><td>우선공급</td><td>130% 이하</td><td>~9,793,892원</td><td>~11,442,863원</td><td>~12,125,081원</td><td>~12,878,142원</td><td>~13,631,203원</td><td>~14,384,265원</td></tr>
<tr><td>일반공급</td><td>130% 초과 160% 이하</td><td>9,793,893원~
12,054,021원</td><td>11,442,864원~
14,083,523원</td><td>12,125,082원~
14,923,176원</td><td>12,878,143원~
15,850,021원</td><td>13,631,204원~
16,776,866원</td><td>14,384,266원~
17,703,710원</td></tr>
<tr><td>추첨공급</td><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td><td>12,054,022원~</td><td>14,083,524원~</td><td>14,923,177원~</td><td>15,850,022원~</td><td>16,776,867원~</td><td>17,703,711원~</td></tr>
</table>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td></tr>
</table>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

유의사항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 지역 → ② 추첨
- 2순위 : ① 지역 → ②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② 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
<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
</table></td></tr>
</table>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 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 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청약신청 일정 및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2026.09.28.(월) (인터넷 접수 : 09:00~17:30) (현장접수 :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주소 : 경남 진주시 평거동 1092-1번지	• 일시 : 2026.10.08.(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일반공급	1순위	2026.09.29.(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6.09.30.(수) 09:00~17:30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정당 계약기간 이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가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에 정정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일정 등 유선으로 통보함)
-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결번 또는 오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청약통장 가입은행)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부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 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0.08.(목) ~ 2026.10.17.(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0.08.(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확인 서류 제출 안내

▣ 당첨자 자격 검증 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2026.10.09.(금) ~ 2026.10.16.(금) 10:00~16:00까지	•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견본주택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092-1번지 • ☎ 055-757-7979	※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홈페이지 (https://www.레이크써밋웰가.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별도 통보 예정 /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자격 검증 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당첨자 자격 검증 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 검증 확인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 검증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첨자 자격검증 확인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 검증 확인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 해당 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홈페이지(https://www.레이크써밋웰가.com)를 통해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 검증 확인 서류 제출 안내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포함)	O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O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주택공급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 가능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 기타(직접작성) 아파트 계약 / 제출처 :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 ※ 기관추천 대상자 제외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O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군복무 기간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청약자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경우(견본주택 비치)
		O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주택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팩스 및 복사본 접수 불가)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청약자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경우(견본주택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O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체류중인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청약자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경우(견본주택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 증빙서류)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팩스 및 복사본 접수 불가)
		O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O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O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신생아 특별공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 증빙서류)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팩스 및 복사본 접수 불가)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청약자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경우(견본주택 비치)
		O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세대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O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O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체류중인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자료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해당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이 필요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당일 견본주택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 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소득금액증명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②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소득입증서류를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제출할 수 없는 자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뉘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 ②, 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등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정부24 ※ 세무소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또는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소득을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상기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 ②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④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및 세무서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②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상기서류로 결정세액 납부 및 환급 내역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일 경우 : * 일반,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 (단,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불인정)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④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6, 2018, 2019, 2021, 2026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제출 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위택스(www.wetax.co.kr),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주택과 토지의 경우,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 가능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 인쇄·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인쇄·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 일사편리(kras.go.kr) ③ 서울시 – 이택스(etax.go.kr) 서울 외 – 위택스(www.wetax.c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신청 및 열람하기 조회결과 인쇄·제출 ※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관할자치단체 : 전체 / 과세연도 : 2026년 /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만 선택) ※ 위택스(www.wetax.go.kr) >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정부24 ② 위택스(www.wetax.co.kr),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1.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2026.10.19.(월) ~ 2026.10.21.(수) 10:00~16:00	•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견본주택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092-1번지	☎ 055-757-7979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아래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아파트 1차 계약금(1천만원),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 뱅킹이체 내역증
	O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 기타(직접작성) 아파트 계약 / 제출처 :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O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1/2씩 연대하여 균등 부담 ※ 수입인지 구입처 및 납부 금액 : 하단 참조
	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홈페이지 서식 게시
		O	추가 개별통지 서류	해당자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 외 모두)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 기타(직접작성)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제출처 :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위임장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거래신고 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은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수입인지 구매금액 –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의 1/2을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 분담

구분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총 금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계약자부담 (50%)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구매 절차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 정보 입력(인지세 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 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발코니 확장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하나은행	245-910013-938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 계약자일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오입금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공급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취급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주택소유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진주시가 아닌 그 외 지역의 대출취급기관(본점 및 지점 등)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거

리에 위치할 수 있어 중도금 대출(권리의무승계 계약서상 양도인 및 양수인의 대출취급기관 방문 관련 등)과 관련하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분양대금의 10%(1차, 2차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당월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당월 시행위탁자의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단, 당월 대출 실행일 전 입주지정일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는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 축소 및 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시행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대출취급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본 아파트의 시행위탁자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시행위탁자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잔금대출은 정부의 금융규제 또는,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대출조건에 따른 적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잔금대출 신청 전 반드시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나, 관련 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확인 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 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 소유 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확인

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 결과 주택 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확인 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된 분은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특례 제외)
  4.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6.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7. 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8.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9.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1.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이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 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 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 검증 확인 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 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분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분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를 통해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분은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와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진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액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계약관리 및 일정 통보(사업주체,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교육관할청·인허가청 요청 시 자료 제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 정보제공(「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 분양권 전매는 총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전매 가능일은 추후 공지 예정 임)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 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공급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법」 제48조의2,「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일 안내

▣ 2029년 1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부대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용역원휴게실, 전기실/발전기실, MDF실, 통신실, 팬룸 등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시니어라운지(경로당), 작은도서관, 물빛도서관, 피트니스센타, 골프연습장, G/X룸,프라이빗 독서실, 샤워실, 탈의실, 써밋 스카이 라운지, 키즈 스테이션, 근린생활시설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9 참고사항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 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table>
<tr><td></td><td>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td><td>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
<tr><td>제53조 제9호 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
<tr><td rowspan="3">제53조 제9호 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
<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
<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
</table>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td></tr>
</table>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옵션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78	15,500,000	1,550,000	13,950,000	
84A	16,500,000	1,650,000	14,850,000	
84B	15,500,000	1,550,000	13,950,000	
119	20,500,000	2,050,000	18,450,000	
182PH	30,500,000	3,050,000	27,45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항 목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하나은행	245-910013-94404	(주)하나자산신탁

- 상기 공사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고,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자료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및 두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내 마감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거실과 침실1에 기본으로 설치되며, 이는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제외됩니다.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및 색상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커튼박스 깊이 축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실외기실 등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수 있으며 결로등의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형 182㎡형의 발코니2 공간은 서비스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포함된 공간입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약식표기	제조사	미선택 시	설치수량	선택 시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78	삼성전자	기본배관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040,000	704,000	6,336,000	
84A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040,000	704,000	6,336,000	
84B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040,000	704,000	6,336,000	
119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0,120,000	1,012,000	9,108,000	
182PH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12,100,000	1,210,000	10,890,000	
드레스룸 제습기	힘펠	미설치	전타입	침실 1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1,430,000	143,000	1,287,000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설치 예정품목이었던 거실(스탠드형)+안방(벽걸이형)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거실, 안방) 냉매 매립배관 감소비용과 시스템에어컨 옵션 설치로 인한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드레스룸 제습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시공 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거실과 침실1에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등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품의 품절·품귀·생산중단,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또는 폐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성능 또는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동등 성능 이상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부속품의 사양 등이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지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 옵션상품 계약, 디자인, 시공품질 등을 사유로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기의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2) 가전기기 특화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품목	미선택 시	선택 시	약식 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빌트인냉장고	미설치	빌트인 냉장고 설치	전타입	5,390,000	539,000	4,851,000	삼성전자
식기 세척기	미설치	식기 세척기 설치	전타입	1,320,000	132,000	1,188,000	삼성전자
1구 인덕션	미설치	보조주방 인덕션 + 렌지후드	182	528,000	52,800	475,200	
3구 인덕션	3구 가스하이브리드(발코니 확장시)	3구 인덕션	전타입	1,254,000	125,400	1,128,600	
비데	부부욕실	공용욕실	78, 84A, 84B, 119	286,000	28,600	257,400	
	부부욕실	공용욕실+침실4 욕실	182PH	550,000	55,000	495,000	

[가전기기 특화 유의사항]

- 빌트인냉장고는 가구/마감재 특화 항목 중 냉장고장 스타일업(빌트인 냉장고장) 선택시에만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3) 가구/마감재 특화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품목	미선택 시	선택 시	약식 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강마루	강마루(W98) 모노라이트애쉬	강마루(W127) 모노라이트 콤비	78	1,650,000	165,000	1,485,000	
			84A	1,870,000	187,000	1,683,000	
			84B	1,760,000	176,000	1,584,000	
			119	2,640,000	264,000	2,376,000	
			182PH	2,915,000	291,500	2,623,500	
보조주방가구	미설치	하부장+엔지니어드스톤(상판)	119	2,090,000	209,000	1,881,000	
거실/복도 스타일업	실크도배	1안) 거실+침실2 통합 시, 가구판넬+시트판넬	78	1,430,000	143,000	1,287,000	
		2안) 거실+침실2 분리 시, 가구판넬+시트판넬		1,980,000	198,000	1,782,000	
		1안) 거실+침실2 통합 시, 가구판넬+시트판넬	84A	1,540,000	154,000	1,386,000	
		2안) 거실+침실2 분리 시, 가구판넬+시트판넬		2,090,000	209,000	1,881,000	
		가구판넬+시트판넬+아트월타일	84B	3,190,000	319,000	2,871,000	
		가구판넬+시트판넬	119	3,630,000	363,000	3,267,000	
		시트판넬	182PH	6,270,000	627,000	5,643,000	
주방 스타일업	엔지니어드 상판+벽타일	세라믹 상판+벽+사각싱크대	78	4,290,000	429,000	3,861,000	
	엔지니어드 상판+벽타일	세라믹 상판+벽+사각싱크대+장식장	84A	5,610,000	561,000	5,049,000	

	엔지니어드 상판+벽타일+수납장	세라믹 상판+벽+사각싱크대+땅콩장+장식장	84B	5,830,000	583,000	5,247,000	
	엔지니어드 상판+벽타일	세라믹 상판+벽+사각싱크대+땅콩장+아일랜드식탁+장식장	119	9,460,000	946,000	8,514,000	
	엔지니어드 상판+벽타일	세라믹 상판+벽+사각싱크대	182PH	4,730,000	473,000	4,257,000	
냉장고장 스타일업	일반 냉장고장	빌트인 냉장고장	78	1,760,000	176,000	1,584,000	
			84A	1,650,000	165,000	1,485,000	
			84B	1,430,000	143,000	1,287,000	
			119	2,200,000	220,000	1,980,000	
			182PH	1,650,000	165,000	1,485,000	
드레스룸 스타일업	시스템가구+화장대+기본조명	벽판넬 시스템가구+화장대일체형+라인조명+원슬라이딩도어	78	4,290,000	429,000	3,861,000	
	시스템가구+화장대+기본조명	벽판넬 시스템가구+화장대일체형+라인조명+원슬라이딩도어	84A	8,030,000	803,000	7,227,000	
	시스템가구+기본조명	벽판넬 시스템가구+화장대일체형+라인조명	84B	5,610,000	561,000	5,049,000	
	시스템가구+화장대+기본조명	벽판넬 시스템가구+화장대일체형+라인조명+붙박이장	119	7,590,000	759,000	6,831,000	
	시스템가구+화장대+기본조명	벽판넬 시스템가구+화장대일체형+라인조명+4슬라이딩도어(시스템가구)		9,614,000	961,400	8,652,600	
	시스템가구+화장대+기본조명	벽판넬 시스템가구+화장대일체형+라인조명+원슬라이딩도어	182PH	5,500,000	550,000	4,950,000	
조명스타일업	기본 LED등	거실, 안방 라인등 및 디밍, 주방 레일등	78	2,310,000	231,000	2,079,000	
			84A, 119, 182PH	2,530,000	253,000	2,277,000	
			84B	2,860,000	286,000	2,574,000	
일반가구 스타일업	침실3 붙박이장(W1600)	침실3 붙박이장(W3200)	182PH	2,750,000	275,000	2,475,000	
테라스 스타일업	PL창호+철재난간+바닥타일	4분할 폴딩도어+유리난간+합성 데크	182PH	8,547,000	854,700	7,692,300	

■ 기타 유의사항

1)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전체 옵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3)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및 실물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릅니다.
5)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6)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7)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11)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유상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입주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유상옵션 판매금액은 유상옵션 공사시 발생하는 빌트인 가구, 마감공사 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및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제공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유상옵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14) 유상옵션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유상옵션 계약 시 견본주택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안내 받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5) 유상옵션 상품구성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 기준의 예정사항으로 카다로그, 모집공고 등 홍보물에 표시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시공여건,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유상옵션 중 완제품으로 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17) 119타입 목문 무상선택옵션 선택시 전신경이 미시공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안내

- 추가선택품목 납부는 아래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및 유상옵션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유상옵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예시 1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50505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공급자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 된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하나은행	245-910013-951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예시) 1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5홍길동"으로 기재

11 안내 및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동측에 12m 도로, 남측에 20m 도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진동 및 야간 전조등 불빛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주변 도로 여건에 따라 단지 진출입 시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현장 및 관련 계획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은 판문천과 접하며, 하천 건너편에 2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도로는 현재 미개설 상태로 개설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의 사업 시행 일정에 따라 입주 시점 이후 개설될 수 있습니다. 향후 개설 시 소음·진동 및 조망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예정도로 및 공공공지는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노선·폭원·형태 및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성 시기는 관계기관의 사업 시행 일정에 따릅니다.
- 단지 대지경계선 외부의 완충녹지, 산책로 및 통학로는 당 단지 소유가 아니며, 조성 및 유지관리 책임은 관계기관에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완충녹지의 산책로 및 통학로, 하천변 보행로를 통해 외부인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하천과의 높이 차이가 있어 자연석, 옹벽·석축·계단·경사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의 조망·채광·프라이버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자연석, 옹벽·석축·계단·경사로의 설치범위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인접 획지의 개발에 따라 조망·일조·소음·통풍 등 주거환경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인접 지역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101동과 103동 사이, 102동과 어린이집 사이)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단지 입주민 외에 일반 행인 및 인근 주민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개방되며 이로 인한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천(판문천) 인접]

- 단지 서측에 접한 판문천은 당 단지 소유가 아니며 관리 주체는 관계기관으로, 하천 정비사업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절·기상 여건에 따라 습도, 안개,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사항]

- 당 단지는 2025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25년 9월 승인을 받은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법적 기준(친환경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 본공사 시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 개선 등의 사유로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및 구역경계선은 최종 측량 결과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여건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 내 타 토지의 용도·위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디자인은 현장 여건, 인허가청 협의 및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색채, 재료, 재질, 창호의 형태 및 크기, 난간의 색상 및 재질, 외부 BI·CI의 위치 및 형태 등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감재]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 참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합니다.
•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닙니다.

[분양 홍보물] (견본주택 및 모형, 카달로그, 각종광고지)
•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합니다.
•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입면 디자인 (저층부 석재 및 도장디자인 등), 줄눈, 조경, 색채, 몰딩, 창호, 옥상장식물, BI 위치와 크기 및 개소, 필로티, 외부계단. 단지내 옹벽 등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커뮤니티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및 주요사항

[공통사항]
• 각 동별 특성에 따른 인접세대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각종 급배기구의 배치·구조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환경권(일조, 조망, 소음, 진동 등) 제한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방향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조망은 보장되지 않으며, 동·호수 및 층별로 조망 범위가 상이합니다. 조망은 인접 획지의 개발, 수목의 생장, 시설물의 설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배치 및 평면 조합에 따른 입면 요철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이 동일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놀이터),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저층부는 특화마감, 그 외 주차장 외벽 및 세대 하부층 PIT 외벽 등은 도장으로 마감되며, 적용 면적 및 디자인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청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 및 입면 타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면인식 로비폰 내 원패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원패스시스템은 입주자 스마트폰 내 블루투스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동별 출입구는 보도 폭 및 조경 계획에 따라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색상·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공청/위성안테나, 이동통신[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무선통신보조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추후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옥상난간, 야간경관 조명, 공청·위성안테나, 이동통신용 안테나, 무선통신보조설비, 피뢰침, 태양광 집광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진동 등 환경권과 조망 제한, 빛 반사 및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 눈부심, 풍절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집광판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102,103,104,106동 옥상층 및 지하2층 EPS/TPS)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 세대는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옥상 층 102동_182TY(동방향) 중계기설치 및 182TY 남동방향, 84ATY 북방향 옥외 안테나설치 / 103동_84ATY(북방향) 중계기설치 및 84ATY(북방향) 북/남동방향, 84ATY(남방향) 북서방향 옥외 안테나설치 / 104동_84ATY(동방향) 중계기 설치 및 84ATY(동방향) 북/남 방향, 84BTY(동방향) 남서방향 옥외 안테나설치 / 106동_84ATY 중계기 설치 및 북/동/남동 방향 옥외 안테나설치 될 예정이며, 옥상 층 4개동(102동/ 103동/ 104동/ 106동) 및 지하2층 EPS/TPS(102동/ 103동/ 104동/ 106동)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외 지하1~3층 옥내 서비스 안테나를 설치하여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특히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옹벽, 자연석쌓기, 조경식재, 마운딩, 사면처리,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미관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됩니다. 준공 후 하자기간까지는 무상 A/S기간이며, 하자기간이후 부터는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됩니다. (무상 A/S기간내 고객의 부주의로 제품이 손상될 경우 별도의 수리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고, 일부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보관함은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 스마트우편함은 각 동 지상1층에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주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지상1층에 7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와 규모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합니다.
-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으로, 전기자동차 외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전 대기 차량으로 인해 램프부 통행이 혼잡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의 변경 등에 따라 입주 이후 충전시설이 증설되거나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주차구획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충전구역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되며, 관련 기준 개정 시 시설의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전기요금,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과 운영 방법은 입주 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보행로는 입점 업종 및 영업시간에 따라 소음, 냄새, 조명, 이용 차량 통행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입점 업종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되므로 사전에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04동 인근 하부 지하2층에는 발전기실/전기실/저수조/펌프실/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 본공사 시 그 위치와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북측 지하에 우수저류조 및 펌프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 세대는 설비 가동 및 유지관리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에 맨홀, 환기구 등이 노출될 수 있고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로, 내진등급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1등급이며, 내진능력 Ⅶ 0.257(g) 입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기타시설(보안등 및 볼라드, CCTV(폴대포함)) 등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화재로 인한 대피기구인 공기안전매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31개소 예정되어 있어 설치 구간에 식재 제한(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이 있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구획을 분리하여 사용하며, 공동주택 차량 진입구에 설치되는 주차 차단기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에는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 이후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램프 및 차량 출입구에 인접한 세대와 주차구획은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매연, 전조등 불빛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1층 주차장 램프 인접 구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세대별 외벽에는 세대 환기용 배관이 가스보일러 배관과 함께 노출되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설치 위치, 구조물의 형태·위치·디자인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101동 북측 1개소, 101동과 102동 사이 1개소, 103동 북측 1개소, 103동 동측 1개소, 103동과 104동 사이 1개소, 104동과 105동 사이 1개소, 106동 북측 1개소 총 7개소가 위치하고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설치위치, 구조물의 형태·위치·디자인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 부서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MOCK-UP,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세대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되며, 샘플하우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주동건물, 주민공동시설, 공용시설, 창호, 옥외시설물, 옥상바닥, 난간, 루버 포함), 형태(측벽 메지,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상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문양 및 위치는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 BI는 조명형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빛공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BI 및 루버는 시공시 크기, 위치, 디자인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로 차량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또는 입주자가 점용 사용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층간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용 조명 및 보안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수경시설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필로티]

- 일부 동은 필로티를 통한 진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필로티 내부의 계획 및 마감 높이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직상부 세대는 하부가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동일 평형의 타 세대와 비교하여 겨울철 바닥면 체감온도 및 냉난방 부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상 단열 기준은 충족하여 시공됩니다.
- 필로티는 개방된 통로 형태로 구조 특성상 소리가 반사·증폭될 수 있어, 필로티 직상부 및 인접 세대는 보행자 통행 등에 따른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는 계절 및 기상 여건에 따라 국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통행 불편 및 풍절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엽, 우수 유입 등에 따라 바닥면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의 조경, 조명, 마감재, 천장 형태 및 시설물 등의 위치·규모·디자인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하부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개인 물품의 적치 및 임의 사용이 제한되며 이용 방법은 입주 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지출입구]

- 단지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비상차량 출입구가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방문(외부)차량 통제를 위해 주차차단기가 설치될 계획이며, 주차차단기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비상차량 출입구는 긴급차량의 진입을 위한 시설이나 상시 개방되어 운영되므로 일반 차량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입주 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차량 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진동, 전조등 불빛에 의한 눈부심, 조망 제한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차량의 출입 방법, 주차 가능 시간 및 주차요금 부과 여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주 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파트주동]

- 101동 동측 하프코트, 남측 부출입구, 102동 동측의 진입마당, 남측의 어린이놀이터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3동 북측 어린이놀이터 서측 피트니스가든,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동측 널문조각광장, 남동측 커뮤니티한마당, 남서측 진양수변마당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4동 동측의 커뮤니티한마당, 커뮤니티 선큰, 1층 시니어라운지, 서측 어린이놀이터, 남서측 야외무대,널문한마당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5동 서측의 널문한마당,야외무대, 남측의 근린생황시설, 남서측 주출입구 및 비상출입구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6동 남동측 주출입구 및 비상출입구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위 시설의 위치, 규모 및 명칭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1층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추후 실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1층부터 지하3층에 제연 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휀룸의 기능상 이유로 DA(급배기구)가 일부 추가되거나 이동될 수 있습니다. DA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조망

제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제연설비는 평상시 미가동 상태이나 법정 점검 및 화재 시 가동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과 103동 사이에 공공보행통로가 예정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하 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3층까지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동마다 접하는 주차면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3층 주차장은 단지 일부에만 계획되어 있어 104동, 105동, 106동은 지하3층 주차장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지하1층)과 근생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69대(완속69대)이며, 아파트(완속67대) 및 근생(완속2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의 주행로 유효높이는 택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그 높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설치되는 비상벨시스템, CCTV, 무선통신 안테나 및 케이블,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및 옥내 서비스 안테나 및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 벽, 설비등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2층	2.3m(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지하 3층	2.3m(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부대복리시설]
- 본 건축물 내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 위치	개수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103동 서측 지상1층	1
	경로당(시니어라운지)	104동 지상1층	1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물빛도서관, 주민회의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탈의실/샤워실(남,녀)	주민공동시설 지하2층	1
	프라이빗 독서실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	1
	써밋스카이라운지	103동 27층	1
	키즈스테이션	주출입구 인근 1층	1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인근 1,2층	1

-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은 입주 초기 일정 기간 사업주체가 선정한 운영사가 위탁운영하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주체가 변경됩니다. 운영비용 및 운영방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입주자가 일정금액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 후 입주자의 서비스 선호도에 따라 변경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시니어라운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물빛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이용으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는 104동측면 SUNKEN 내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그로인해 저층세대 및 보행시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는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지상1층에 경로당이 최상층에 써밋 스카이 라운지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지상1층 서측편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지하2층에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물빛도서관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키즈테이션이 설치됨.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물빛도서관, 써밋스카이라운지 , 키즈스테이션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물빛도서관, 써밋스카이라운지, 키즈스테이션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의 신발장·주방가구·바닥난방·천장형 에어컨, 작은도서관의 도서 1,000권 이상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 등)의 운동장비 및 탈의실 라커류(소모성 물품 및 개인 장구류 제외)가 제공되며, 그 외 이동식 가구·가전, 소모성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고,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입주관리 및 A/S 업무를 위해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요사항**

[공통사항]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기준층 및 최상층은 2,300mm로 계획되어 있고, 182PH 타입의 최상층은 2,600mm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가 불가하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폭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시행위탁자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장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텐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 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두께 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부 가구, 빌트인제품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일부 가구 하부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 시공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 시공됩니다.
- 욕실 바닥 레벨(단차)은 배수를 위한 구배시공으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장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수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내기에서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발코니,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손끼임방지자재가 세대내 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침실1 분합창 외측(발코니1방향)에는 본공사 시 방수를 위한 턱이 만들어짐으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78,84A,84B,119타입 침실3, 182타입 침실4에 집광채광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으며,「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줄눈채움이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84A타입 드레스룸 스타일업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의 드레스룸 가구는 모델하우스 POP의 기본형타입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사업계획승인도서 변경 예정 입니다.

[하향식 피난구]

• 78, 84A, 84B, 119, 182타입은 피난용으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피난용 하향식 피난구는 짝수층,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피난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1층 및 필로티 상부 세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인허가 과정 중 해당세대에는 대체피난기구(완강기 등)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제공품목]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추가 선택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 거실 아트월의 경우 해당위치에 대형타일(600*1200)이 시공되며 주택형별 타일의 색상, 컬러, 종류 및 나누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각종 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공사]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호공사]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확장시 제공되는 이중 창호의 프레임은 외부창호의 외측면에 컬러창호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비확장 세대는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고 내부 분합 이중창이 설치됩니다.
• 거실 창호의 경우 추후 창호 프레임 처짐 방지를 위해 하부 지지 프레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으며, 루버외부에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 되고, 창호 디자인 및 창호사양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실 시공시 욕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침실1과 거실에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세대는 제외입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합단자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5,700K로 적용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을 적용, 추가적인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조명 옵션 선택 시 안방 및 거실의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3000k~5700k로 적용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을 적용, 추가적인 색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 욕실내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에어컨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되며,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 시공됩니다.
• 세대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보일러 등은 발코니 내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습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손빨래수전은 마감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마감 커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전기,통신),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 스프링클러헤드, 소화기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장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의 커버는 노출 시공되며 설치위치와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복도 등 전체 공용부 천장부 및 세대 전용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와 상부층(상층 세대) 설비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스위치, 콘센트류, 스위치류, 월패드, 주방TV 등은 본 공사시 색상, 재질, UI, 크기, 세부기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및 실외기실]

•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수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내기에서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1층 세대와 필로티 및 부대시설 상부 세대 제외), 화재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의 내림식 사다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 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장,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장이 천장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장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추후 상품구성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의 설치위치가 상이합니다.
- 유상옵션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천장몰딩 및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주방가전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시 수납의 효율을 높여주는 키큰빌트인장(수납특화장)이 함께 제공되며, 키큰빌트인장(수납특화장)은 단독옵션 선택이 가능 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시 설치됩니다.
- 인덕션 옵션 미선택 시 발코니 비확장의 경우 3구 가스쿡탑, 발코니 확장시 하이브리드 가스쿡탑(가스1구+하이라이트2구)가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가구도어부착)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비데 유상옵션 설치 시 부부욕실, 공용욕실 비데가 설치됩니다. 옵션 미선택 시 부부욕실만 비데가 설치됩니다.
- 전실(침실,거실,주방) 바닥 유상옵션 선택 시 와이드 강마루가 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전실 일반 강마루입니다.
- 1구 인덕션 옵션 선택 시 182PH 보조주방에 1구인덕션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상판으로 마감됩니다.
- 78, 84A, 84B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4실(거실+침실1+침실2+침실3)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침실1, 거실 기본 선배관이 설치됩니다.
- 119, 182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6실(119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알파룸,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주방)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침실1, 거실 기본 선배관이 설치됩니다.
- 78타입 주방옵션 선택 시 주방세라믹(상판, 벽체)+사각싱크볼이 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E-STONE상판+벽타일+싱크볼입니다.
- 84A타입 주방옵션 선택 시 주방세라믹(상판, 벽체)+사각싱크볼+주방장식장이 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E-STONE상판+벽타일+싱크볼+도배마감입니다.
- 84B타입 주방옵션 선택 시 주방세라믹(상판, 벽체)+사각싱크볼+땅콩선반+주방장식장이 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E-STONE상판+벽타일+싱크볼+일반 키큰장이 마감입니다.
- 119타입 주방옵션 선택 시 주방세라믹(상판, 벽체)+사각싱크볼+땅콩선반+아일랜드형식탁+보조주방하부장+주방장식장이 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E-STONE상판+벽타일+싱크볼+기본아일랜드+도배 마감입니다.
- 182타입 주방옵션 선택 시 주방세라믹(상판, 벽체)+사각싱크볼이 설치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E-STONE상판+벽타일+싱크볼 마감입니다.
- 78타입 조명옵션 선택 시 거실라인등, 안방등 및 디밍, 주방 레일등, 욕실 센스등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직부등 및 매입등이 설치됩니다.
- 84A타입 조명옵션 선택 시 거실라인등, 안방등 및 디밍, 주방 레일등, 욕실 센스등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직부등 및 매입등이 설치됩니다.
- 84B타입 조명옵션 선택 시 거실라인등(우물천정 길이 크짐), 안방등 및 디밍, 주방 레일등, 욕실 센스등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우물천정크기에 기본 직부등 및 매입등이 설치됩니다.
- 119타입 조명옵션 선택 시 거실라인등, 안방등 및 디밍, 주방 레일등, 욕실 센스등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직부등 및 매입등이 설치됩니다.
- 182타입 조명옵션 선택 시 거실라인등, 안방등 및 디밍, 주방 레일등, 욕실 센스등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직부등 및 매입등이 설치됩니다.
- 78타입 거실/복도마감재 옵션 선택 시 거실외벽에서 공용욕실 벽체까지 시트판넬이, 펜트리 주변 벽면이 가구판넬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도배가 설치됩니다.
- 84A타입 거실/복도마감재 옵션 선택 시 거실외벽에서 공용욕실 벽체까지 시트판넬이, 펜트리 주변 벽면이 가구판넬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도배가 설치됩니다.
- 84B타입 거실/복도마감재 옵션 선택 시 거실외벽, 복도팬트리에서 공용욕실 벽체까지 시트판넬이, 중문에서 침실1문까지 벽체에 포세린타일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도배가 설치됩니다.
- 119타입 거실/복도마감재 옵션 선택 시 거실외벽에서 공용욕실 벽체까지 시트판넬이, 펜트리 주변 벽면이 가구판넬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도배가 설치됩니다.
- 182타입 거실/복도마감재 옵션 선택 시 거실외벽에서 침실복도 및 세탁실벽체까지, 현관 벽체 시트판넬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도배가 설치됩니다.
- 78타입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벽판넬시스템가구+화장대 일체형+천정라인조명+원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도배+일반시스템가구+화장대장+매입등+가구도어가 설치됩니다.
- 84A타입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벽판넬시스템가구+화장대 일체형+천정라인조명+원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도배+일반시스템가구+화장대장+매입등+가구도어가 설치됩니다.
- 84B타입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벽판넬시스템가구(화장대 일체형)+천정라인조명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도배+일반시스템가구(화장대)+매입등이 설치됩니다.
- 119타입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벽판넬시스템가구+화장대 일체형+천정라인조명+가구목도어 또는 원슬라이딩도어+붙박이장 또는 포슬라이딩, 벽판넬형 시스템가구가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도배+일반시스템가구+화장대장+매입등+가구도어가 설치됩니다.
- 182타입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벽판넬시스템가구(화장대 일체형)+천정라인조명+고급아일랜드장이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도배+일반시스템가구(화장대)+매입등+아일랜드장이 설치됩니다.

■ 설계 외 공통사항

- 공동주택 외부에 표현된 소공원, 공공공지는 당 현장 소유가 아니며, 위치·규모·디자인 등은 시공 여건 또는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공공시설용지 등)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6년 08월 사업계획승인(변경)**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관렵법규(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 개인정보 요구 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는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공원, 공공시설용지 등 개설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공급대상의 약식표기는 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에는 반드시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북서측에 위치한 진주민속소힘겨루기경기장으로 인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남서측에 위치한 완공예정인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지구 내외부에 기타용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위탁자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일절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①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사용시설(단지 내 커뮤니티, 운동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브랜드는 시공사의 브랜드관리 정책에 따라 향후 일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29년 11월(예정)입니다. 입주 이후에도 기타용지 공사로 인한 소음,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의 부도, 파산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시 이삿짐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 후 엘리베이터로 운반하여야 하며, 고가사다리 차량 등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및 학교 배정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진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진주시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진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4항 제3호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에 따른 설치여부' 규정을 참고 반영),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학교 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의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 관할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이며 학생 배치는 관할 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합니다.
- 입주 초등학생의 경우 평거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단,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입주 전년도에 확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생은 제8학교군 중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을 위한 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21.01.25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2개소, 주민공동시설(써밋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G/X룸, 골프연습장, 물빛도서관 등), 조경특화시설(수변공간), 근린생활시설, 시니어라운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호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미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따름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는 예비 인증으로서 공사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비 인증서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녹색건축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진주시 평문지구 도시개발사업 1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주	주식회사 [illegible]
준공일	2029.08.01 (예정)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문동 241-1번지 일원
층수	지하2층, 지상37층
연면적(㎡)	[illegible]
건축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설계자	[illegible] 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illegible]
인증기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유효기간	2026-09-03 ~ [illegible]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량(그린3등급)
인증용도	신축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인증기준	[illegible]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우량, 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6년 09월 03일

(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사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진주시 평문지구 도시개발사업 1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청자	주식회사 [illegible]
3.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평문동 241-1번지 일원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콘텐츠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9월 03일

(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전자문서 사본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내진능력
MMI등급	Ⅶ 0.257(g)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부가세 포함)	비고
건축·토목감리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766,166,800원	602-81-08127
전기감리	㈜삼진탑테크엔지니어링	605,234,000원	215-81-88868
정보통신감리	주식회사 원이앤지	250,000,000원	613-81-70015
소방감리	㈜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857,480,000원	120-81-60091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분양형(차입형)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익상(이하 "위탁자"라 함),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이하 "수탁자"라 함)간에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①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익상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②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인 주식회사 익상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인 주식회사 익상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③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익상과 시공사인 흥한주택종합건설(주)에게 있습니다.

④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⑤ 본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⑥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및 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6-101-0005200호	263,301,5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 선택품목 공급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관계자 현황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익상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오동길 10(판문동)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8층 801호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칠암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91111-0068201	161511-0006770

견본주택 / 현장안내 및 유의사항

■ 견본주택 안내 및 유의사항

견본주택 및 현장 약도	분양 안내 및 유의사항
	■ 견본주택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092-1번지 ■ 사 업 지 :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241-1번지 일원 ■ 홈페이지 : https://www.레이크써밋웰가.com ■ 분양문의 : 055-757-7979 ※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및「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